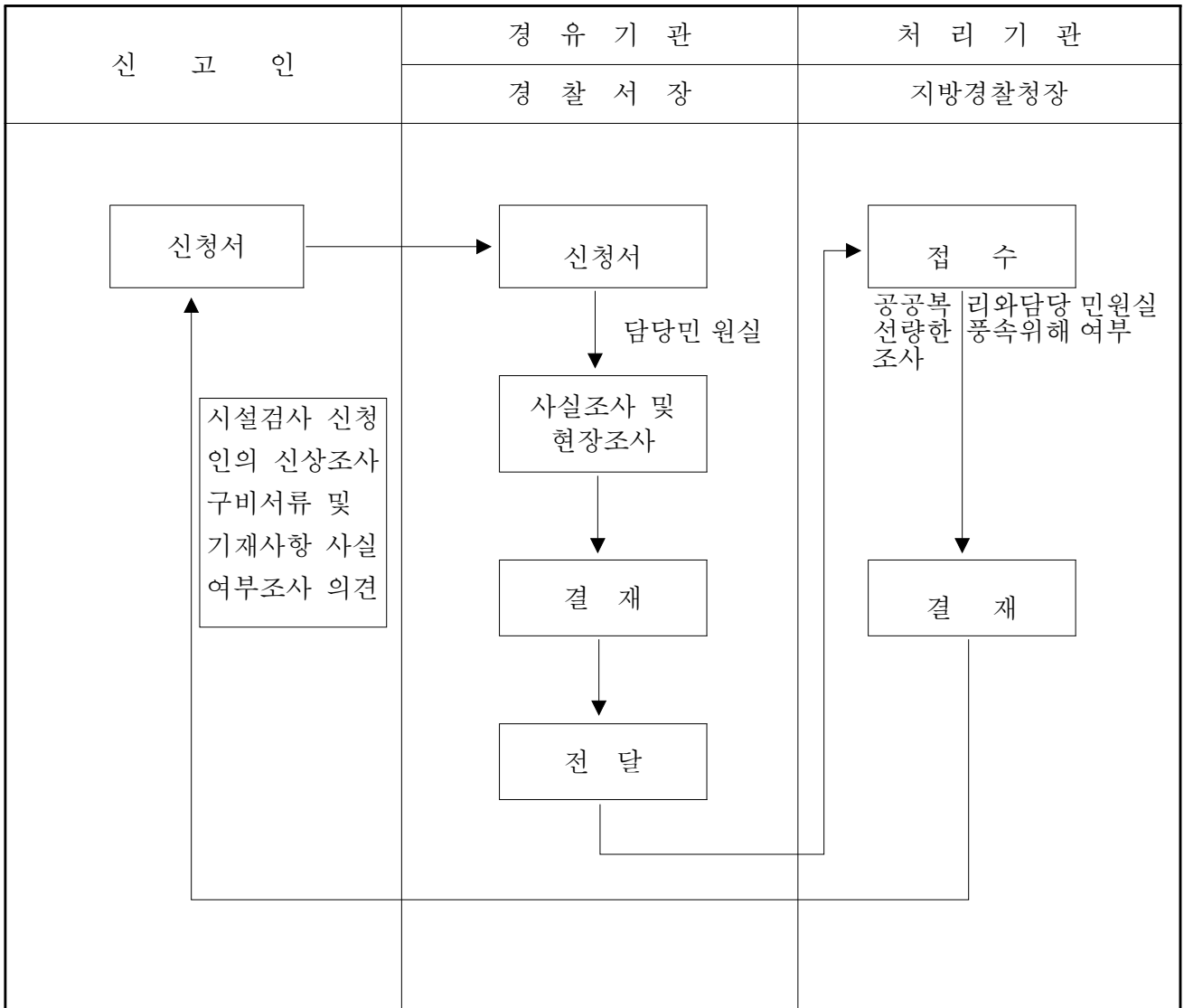


사행행위업(신규·재·조건부)허가신청서						처리기간
						시·도 10일
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 번호			
	③주 소	(전화:)				
④업 소 명						
⑤소 재 지						
시설 규모	⑥면 적		⑦위 치			
	⑧설치사행기구명		⑨대 수	⑩형 식		
	⑪제 작 자		⑫제작번호			
⑬목 적						
⑭허 가 기 간		. . 부터 . . 까지				
⑮시 설 완 료 예 정 일						
<p>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제1항(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(신규·재·조건부) 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 . 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			
<p>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 1통 2. 사업계획서 1부 3. 건축물대장등본(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 1통 4.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. 사행기구의 제조·수입 또는 양도·양수증명서(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 영업에 한한다) 1통 						수수료
						뒷면참조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수 수 료(영 제14조 관련)

구 분	영업의 허가	변경허가	승계신고
복표발행업 및 현상업	10만원	5만원	5만원
기타사행행위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
사행기구제조업	10만원	5만원	5만원
사행기구판매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